

의안번호	2202303
의 퇴 인	진선미의원
회 답 일	2024. 10. 18.
추계번호	24D2335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4조의2제1항 단서 신설(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·녹음)	체포·구속된 피의자, 살인·강도·중죄·수뢰·선거·마약·성폭력 범죄의 피의자,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·횡령·배임 범죄의 피의자 등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	의무규정
2	안 제244조의2제5항 신설 (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·녹음)	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도록 함	의무규정
3	안 제244조의2제7항 신설(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·녹음)	영상녹화물 및 녹음물이 분실·도난·유출·조작·변조·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4조의2제1항 단서 신설(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·녹음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44조의2제5항 신설 (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·녹음)		
3	안 제244조의2제7항 신설(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·녹음)		

2. 상세 사유

□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의무화(안 제244조의2제1항 단서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체포·구속된 피의자, 살인·강도·성폭력 범죄 등의 피의자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임
- 개정안에 따라 피의자 등에 대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하는 경우 영상녹화장비의 구매 및 설치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, 영상녹화장비를 도입하는 청사의 수, 청사당 설치 대수, 도입방식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, 영상녹화 실시로 인한 수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및 검찰수사관 증원 등 인력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, 현 단계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
 - 2024년 9월 현재 전국 검찰청에 설치·운영 중인 영상녹화조사실 개수는 903개이고 영상녹화시스템은 유지관리 업체 직원 10명이 관리하고 있으며, 2023년도 영상녹화조사 이용자 수는 총 4,001명, 유지관리비는 1.93억원임

□ 피의자진술의 녹음(안 제244조의2제5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녹음장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,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영상녹화장비에 음성녹음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할지, 별도의 음성녹음장치를 설치할지 등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계가 곤란

□ 영상녹화물 및 녹음물 분실·도난 등 방지 조치(안 제244조의2제7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영상녹화물 및 녹음물이 분실·도난·유출·조작·변조·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임
- 그러나 영상녹화물 및 녹음물의 분실·도난·유출·조작·변조·훼손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 시 필요한 영상녹화·녹음조사의 방식, 영상녹화 또는 녹음조사실 증설 및 추가 장비 구입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, 현 단계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